

# 행정자치부

## 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관 련 자 ① 경상남도 ○○○○과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경상남도 ○○○실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7. 14.부터 2016. 7. 6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3.부터 2015. 12. 23까지 ○○○○○○업무 관련 각각 실무책임자,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### 1.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(국 서열) 변경 부적정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시기,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며

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(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제출하여야 하고

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

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 2제5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·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경상남도에서는 2014년 하반기, 2015년 상반기·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작성하면서 각 실·국 등 평정단위별로 서열 명부를 제출받은 후 이를 그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,

아래 ‘평정단위별 서열 조정 현황’과 같이 평정단위별로 제출받은 순위와 다르게 평정단위별 순위를 일부 조정하여 변경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전체 순위를 재조정·작성한 다음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각각 2014. 11. 30 / 2015. 5. 31 / 2015. 11. 30 심사·의결을 받았다.

경상남도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현황이 발생된 대상자들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하위권이라 특정인 승진 목적 등을 위한 고의성은 없으나 결국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시켰다.

<2014년 하반기 ○○○○○○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현황>

직급	평정단위별 서열명부	근무성적평정위원회 최종 서열명부	비고
지방○○○○○(○○)	○○○	○○○	
	○○○	○○○	

<2015년 상반기 ○○○○○○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현황>

직급	평정단위별 서열명부	근무성적평정위원회 최종 서열명부	비고
지방○○○○○○○	○○○	○○○	
	○○○	○○○	

<2015년 하반기 ○○○○○○○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현황>

직급	평정단위별 서열명부	근무성적평정위원회 최종 서열명부	비고
지방○○○○○	○○○	○○○	
	○○○	○○○	

<2015년 하반기 ○○○○○○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변경현황>

직급	평정단위별 서열명부	근무성적평정위원회 최종 서열명부	비고
지방○○○○(○○)	○○○	○○○	
	○○○	○○○	
	○○○	○○○	

**2. 파견기관 의견반영 없이 근무성적평정 실시**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3에 따르면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경상남도에서는 2014년, 2015년,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파견(2015. 11. 19.~2016. 11. 18.)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 등 파견자 66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없이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       **경남도지사는**

**[훈계]**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**[주의]**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